

##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3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21. 8. 25.(수) 10:02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한상혁 위원장  
김 현 부위원장  
김효재 상임위원  
김창룡 상임위원  
안형환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 음

---

## 제3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 10시 02분 개회 】

### 1. 성원보고

- 한상혁 위원장
  - 성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국기에 대한 경례

- 권희수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3. 개회선언

- 한상혁 위원장
  - 2021년도 제3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전차회의록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34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겠습니다.

####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한상혁 위원장

- 제35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1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의결안건 가>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에 관한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의거 비공개로 진행하고, 나머지 <의결안건> 1건은 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안건 가>는 비공개로 진행하되, 안전 심의의 효율성을 위해 공개 안전을 먼저 심의하고 이어서 비공개 안전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6. 의결사항**

**나.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관한 건 (2021-36-116)**

○ 한상혁 위원장

- <의결안건 나>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낙준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결주문입니다. ‘<가> (주)비바리퍼블리카에 대하여 [별지 1]의 개선필요사항의 개선을 완료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한다. [별지 2]와 같이 조건을 부가한다. <나> 주식회사 국민은행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지 아니한다’입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별지1] (이하 “토스”),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 등 2개 법인이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따라 실시한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결과를 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지정신청기관 현황입니다. 전자서명 기술을 이용하여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금융서비스 제공기관 2개 사가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청기관 일반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요경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정보보호 등 분야별 전문가 9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접수된 서류에 대해 서류심사를 거쳐 본인확인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적정성 심사를 위해 신청기관 현장

실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기준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 근거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토스는 본인확인기관 지정 기준을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본인확인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일부 개선사항이 필요한 것으로 도출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민은행은 92개 세부 심사기준의 평가기준 중 2개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본인확인서비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 외부 이용자 접근성 인증심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적합 판단을 했습니다. 또 하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의 연동규격 및 연동 소스코드의 부재로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심사결과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신청기관은 다음과 같은 소명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토스는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며, 현장실사 이후 개선필요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조치를 완료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국민은행은 금융기관 특성을 고려하고 현장실사 이후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소명하였습니다. 첫 번째, 최초 인증심사 불합격 사유는 보안키패드로 비밀번호 입력 시 음성 피드백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었으며, 이 부분은 고객의 재산권 보호가 우선이라는 판단으로 음성피드백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또 하나 당시 운용 중인 전자서명 본인인증용 연동규격 및 소스코드를 제출하였는데 그 이후 본인확인용으로 구현하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토스는 최초 신청 시의 부적합 사항을 포함한 92개 평가기준에서 적합하거나 경미하게 미흡하여 치유가 가능한 개선필요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별지 1] 과 같이 개선필요사항에 대한 개선 완료를 조건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부적합 사항이 도출되었음을 감안하여,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첫 번째 소명의견으로 웹 접근성 인증기관에서 국민은행 서비스에 대해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발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방통위가 이용자의 편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전자서명용 연동규격 및 소스코드는 저희가 심사하고 있는 본인확인용과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용을 제시하지 못해 심사위원회가 심사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울러 심사 이후 부적합 사항이 치유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심사 시작 이후 제시된 서류는 저희 심사에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민은행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음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향후 계획입니다. 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신청결과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사항이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효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효재 상임위원**

- 토스는 지난 3월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때 지적되었던 문제가 다 개선된 것이지요?

○ **고낙준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그때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직접 생성하지 않아서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다 완료가 된 것이지요?

○ 고낙준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 예. 그런 부분들을 토스가 지난번 심사 이후 보완해서 심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그런데 국민은행은 웹 접근성 인증기관에서 인증마크를 부여받지 못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 고낙준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 저희가 이용자의 편의성을 측정하는 항목이 있고, 그 수단으로 심사기관들은 민간기관에서 하는 웹 접근성 인증마크라는 것을 보통 저희에게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은행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신청했었는데 해당 기관에서 그 부분을 발행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안키패드로 비밀번호를 입력할 때 음성피드백을 지원하지 않는다. 음성으로 소리가 나와야 하는데 이어폰을 꽂아야만 음성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서 이것 때문에 이용자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은행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로 소리가 나가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주장도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 기본적으로 해당 인증기관에서 이런 것들이 웹 접근성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용자의 편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 때문에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부적합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그렇다면 국민은행은 본인확인기관으로 앞으로도 지정될 수 없는 것입니까?

○ 고낙준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 김효재 상임위원

- 이것이 고객의 안전, 보안, 보호를 위해서도 그런 것인데 그것을 풀어 놓을 수 있습니까?

○ 고낙준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 그런데 그 이후 여러 가지 사유로 보안 대책을 치유해서 국민은행 쪽에서는 웹 접근성 마크를 그 이후에 받았는데 저희가 심사 이후 결과에 대해서는 심사에 반영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은 판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만약 사후에 다시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이 감안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국민은행은 앞으로 이것을 개선했으니까 다시 신청하겠다는 입장입니까?

○ 고낙준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

- 아직 거기까지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저희가 다시 신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김효재 상임위원

-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김창룡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창룡 상임위원

- 토스의 경우 지난 3월 지정 심사에서 한 차례 탈락했는데 그때 이유가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미생성이었는데 이번에 모두 해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민은행의 경우는 이번에 일부 부족한 사항이 확인되었는데 아마 심사가 끝난 뒤에 보완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 드린 것처럼 수행자격을 제대로 갖춘 사업자를 엄격하게 선정하여 본인확인 업무의 공신력을 보장해 주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역할인 만큼 국민은행에 대한 기각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안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안형환 상임위원

- 본인확인서비스는 온라인상 신분 확인 수단으로 무엇보다도 안정성과 보안이 중요합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이용자 보호라는 목적에 걸맞게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해 결과를 도출하였다고 보입니다. 이번에 지정될 신규 본인확인기관은 개선필요사항에 대해서 완벽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이후 사무처에서도 이행 여부를 꼼꼼히 확인 후에 지정서를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김 현 부위원장

- 심사결과에서 나타난 내용이 잘 개선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한상혁 위원장

- 위원님들 모두 원안에 동의하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비공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시 13분 】

**가. 한국방송공사 이사 추천에 관한 건 (2021-36-115) (비공개)**

【 10시 40분 】

**7. 기 타**

○ 한상혁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추가적인 논의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차기 회의는 별도 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한상혁 위원장

- 이상으로 2021년도 제36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0시 40분 폐회 】